[별지3]

= 방송광고물심의필증 =

[필증 번호 : 20-8510호]
[광고심의필: 2020-1529-003500]

본 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약사법 제 68조, 제 68조의 2,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, 제79조, 제80조, 제81조, 제82조, 제83조, 의약품광고사전심의규정에 의거 아래의 광고물을 심의한 결과 이 광고안이 의약품광고 관련 제 규정에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확인합니다.

1. 광 고 주 : (주)한국얀센
2. 광고내용 :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 / Demo 500mg (방송 / TV)
3. 심의일자 : 2020-04-14
4. 확 인 자 : 광고심의팀 (인)
5. 수 령 자 : (인)

2020.04.14

한국제약바이오협회
의약품광고의위원회